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8. 9. 12.(금), 10:0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마. 의결사항

1)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2008-30-120)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7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의거 공익채널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9년도 공익성 방송분야로 6개 분야(시청자 참여·사회적소수이익 대변, 저출산·고령화 사회대응, 문화·예술진흥, 과학·기술진흥, 공교육 보완, 사회교육 지원)를 선정함.

* 공익채널 의무송출을 6개 분야에서 3~4개 분야로 축소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주요내용

- 가. 금년 선정할 공익채널 유효기간은 2009.1.1~12.31까지이며, 케이블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
- 나. 공익채널은 9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방송분야별로 2개 채널을 선정 하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
- 다. 주요 추진일정은 9월말까지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중에 심사 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를 완료하여, 10월말 선정결과를 최종발표함

2) 200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2008-30-121)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2009년 3월까지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200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내용

- 가. 재승인 대상사업자(4개사)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보도	종합보도	(주)와이티엔	YTN
	경제보도	(주)매일경제티브이	MBN
홈쇼핑		(주)지에스홈쇼핑	GS홈쇼핑
		(주)씨제이홈쇼핑	CJ홈쇼핑

- 나. 재승인심사는 재승인기간 동안 운영실적 및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을 9인 내 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별로 평가함
- 다. 심사결과,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 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승인을 거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의결함
- 라.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은 10월말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중에 심 사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신청사업자 의견청취 및 서류심사를 완료하여,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을 의결함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웰빙다이어트티브이(주) 등 6개사(2008-30-122)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등록신청한 웰빙다이어트티브이(주),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원방송(주), (주)

오마이뉴스,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다이렉트미디어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함.

※ 주요내용

법 인 명	채 널 명	방송분야
웰빙다이아트리브이(주)	다이아트리브TV	여성(텔레비전)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무비엔티비	영화(텔레비전)
대원방송(주)	ch King	드라마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텔레비전)
(주)오마이뉴스	오마이비즈니스TV	비즈니스정보(텔레비전)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TV검색	오락(데이터)
(주)다이렉트미디어	스포츠플러스	스포츠(데이터)

**4)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및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주)한국
케이블TV호남방송의 (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합병(2008-30-123)**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
인의 합병 등) 및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에 따라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이
(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을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합병인가 및 변경허가를 원
안대로 의결함.

5)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조건 부여에 관한 건 -초고속인터넷 9개 사업자(2008-30-124)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CATV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허가를 신청한 (주)강원네트웍스미디어
등 9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부여
하되, 허가조건 '5-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판매 시 CATV와 결합해서만 판매하는 행
위금지'를 '5-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판매 시 CATV와 결합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를 금지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함.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 현황(9개사)

법 인 명	허가대상역무	서비스지역
(주)강원네트웍스미디어	초고속인터넷	강원도 홍천군
(주)파워네트워크	초고속인터넷	강원도 양구군
(주)화천케이블넷	초고속인터넷	강원도 화천군
(주)더블어넷	초고속인터넷	경기도 포천군
(주)새빛넷	초고속인터넷	경기도 남양주시
(주)청주케이블네트워크	초고속인터넷	충북 옥천군
(주)씨씨에스	초고속인터넷	충북 제천시
(주)씨씨비	초고속인터넷	충북 음성군
JCN울산중앙방송(주)	초고속인터넷	울산광역시

나. 허가조건(안)

-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개시, 일반적 법령준수, 사업 계획의 성실의무 등 일반사항을 부여
- 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해 서비스의 안정적 관리·민원처리·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
- 이용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CATV와 결합된 상품만을 이용자에게 판매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 저해방지 등을 위한 의무를 부여
- 사회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입자정보에 대한 불법 사용금지

아. 기 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9월 19일(금)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2:05)

※ 11:20 정회, 11:25 속개